

# 대구예술대학교 AU뷰티건강산업연구소 운영규정

(제정 2013.04.0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국·내외 뷰티건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AU뷰티건강산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소재)** 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 (사업)**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- 가. 뷰티 및 건강관련 정책연구
- 나. 뷰티 및 건강관련 교육연구
- 다. 초청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
- 라. 산·학·연 협력 및 교류활동지원
- 마. 뷰티건강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 수행
- 바. 뷰티건강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·기술 자문 지원
- 사. 뷰티건강산업 전문인력 양성
- 아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조직

**제4조 (연구원)**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동의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.

**제5조 (특별연구원)** 소장은 제4조 이외의 자라도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6조 (부서)** 연구소산하에 부설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 (임직원)**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.

- 소장 : 1명
- 부소장 : 1명
- 고문 : 약간 명
- 사무국장: 1명
- 연구위원 : 약간 명
- 자문위원 : 약간 명
- 감사 : 1명

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연구원,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
**제8조 (임명, 임기)** ① 소장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② 운영 및 기타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9조(임무)**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.

②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.

③ 사무국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감사는 연구소의 일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며, 그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### 제 3 장 회의

**제10조(운영위원회)**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, 사무국장,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예산 및 결산
- 사업계획
- 규정의 개폐
-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4 장 재정

**제11조 (경비)**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총당한다.

- 연구소의 연구 보조금
- 개인이나 단체의 연구 보조금
- 기타 수입

**제12조 (연구비)**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, 학술활동비 및 기타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 (예산 및 사업계획)** 소장은 매년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 (결산 및 사업보고)** 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